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604
----------	-------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연 번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578호)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024. 11. 14.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4.30.) 상정·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 토론·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19.) 상정·축조심사
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592호)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2025. 5. 2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9.22.)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19.) 상정·축조심사
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946호)	박준태의원 대표발의	2025. 6. 1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9.22.)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19.) 상정·축조심사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3900호)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2025. 11. 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11.1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19.) 상정·축조심사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19.)는 위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되, 2의 법률안은 대안에 주요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3·4의 법률안 3건은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 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11. 26.)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인바, 현행법상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 사건이 연 평균 2,800여건에 달하여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미제사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헌법연구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대학교수, 판사로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정년 연장 등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60세”를 “65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헌법연구관) ① ~ ⑥ (생략)	제19조(헌법연구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u>60세</u> 로 한다.	⑦ ----- ----- ---- <u>65세</u> -----.
⑧ ~ ⑪ (생략)	⑧ ~ ⑪ (현행과 같음)